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광주시) 공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사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청정대기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명: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광주시)
- ☐ 사업기간: 2026. 9.~ 2026. 12.
- ☐ 지원지역: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원
- ☐ 사업규모

지역	사업량	사업비(단위:원)	비고
광주시 초월읍 일원	4개소	230,000,000원	방지사설 설치 비용 최대 90% 지원(VAT제외)

☐ 지원내용

- 노후 대기오염방지사설 교체 설치 지원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사설의 신규·교체
 - 대기오염방지사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지원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방지사설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병행
- ※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지원금액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사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사설	가스상물질 방지사설		조합 및 공동방지사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며, 방지사설 종류·시설·용량별 세부 단가는 업무처리지침 별표를 따름.

※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위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사설 설치 우선지원

- 10년 이상 노후 방지사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시설 사양 및 재질(FRP, STS 등)에 따른 보조금 30% 금액 상향 신청 불가
- 흡착에 의한 시설 활성탄 설계 시 양파망 적재방식 채택 지양
-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설계기준 반드시 준수)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사업 설계기준 및 보조금 지급기준>

- (설계기준) THC 저감을 위한 활성탄량은 체류시간 0.3초 적용 산정
- (보조금 지급기준) 설계기준에 맞게 설치된 방지시설에 한하여 교체 전 방지시설 설치 용량 기준으로 지급. 단,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방지시설 용량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교체 후 방지시설 용량 기준으로 지급

□ 사업 참여 기준

- 사업장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 환경전문공사에 등록된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진흥원에 제출
- 지원사업장은 방지사설 견적서 등과 함께 진흥원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진흥원은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본 지침에 의한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다만 방지사설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보다 증액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3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유의사항)



□ 사업신청

- 배출업체는 방지사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
- 신청서, 방지사설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 ※ 지자체·진흥원은 사업시행 공고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사전에 안내

□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사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지자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서식 6)
- 진흥원으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진흥원에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은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허가 등 신청

-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사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 지자체는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치·이전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안내(「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사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설치 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서식 8)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 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방지지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지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지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지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붙임 1)
 -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말뚝조치를 하여야 함
 - ※ 방지지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지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진흥원은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지지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지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지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지설 전단 측정 면제
 - ※ 방지지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준공심사

- 방지지설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방지지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지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 12), 전송 확인서(서식 13)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및 운영될 것

- 사업 승인 후 설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변경설계 근거, 변경 도면, 예산 등) 진흥원으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설계대로 제작·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시공 또는 보조금 제외)
- 제출된 설치계획서 및 가동개시 된 인허가증은 동일하게 설계될 것
- 방지사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방지사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 측정 실시

-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사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사설 전단 측정공 설치 가 면제 된 경우 방지사설 전단 측정 면제사유서 작성
- 방지사설 설계 배출가스량(표준상태) 대비 자가측정 배출가스량은 설계 풍량 대비 80% - 110% 범위에서 배출되어야 함
- 개선 후 농도는 개선 전 농도보다 낮아 지원 전·후 효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 사물인터넷 설치 후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측정자료 전송될 것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으로 전송 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 관리제도 업무편람 참조

□ 보조금 지급

- 진흥원은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12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13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방지사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10)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11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14),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자가측정 결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 보조금 지급 제외 범위

- 총공사비의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사업장에서 부담하며 방지 시설 용량별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체 투자비용으로 부담함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자문료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악취물질 포집을 위한 후드·덕트 및 밀폐시설 추가 공사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 가능

※ 추가 공사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및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과도한 후드·덕트 공사비 산정 시 감액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착수계 제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방지지설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함
-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기존 방지지설 대비 용량이 증가하여 설계 및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용량 증가 사유 및 필요성 검토 자료(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용량 증가 사유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설계사양 및 공사비 내역이 부적정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전 방지지설 용량 기준으로 보조금이 감액 지원될 수 있음
 - ※ 후드·덕트 추가 공사에 따른 금액 상향은 배출시설의 후드·덕트에 한정하며, 방지지설의 덕트는 방지지설 설계 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과도하게 후드·덕트 금액 산정 할 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감액 및 조정할 수 있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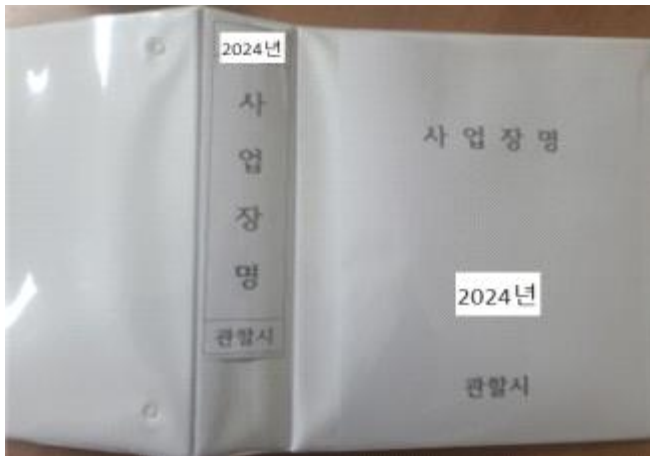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접수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6. 9. 15.(화) ~ 2026. 9. 30.(수) 18:00
- 신청방법
 - 제 출 처: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sub@ggeea.or.kr)
 - ※ 원본 제출과 동시에 신청서 전체 전자파일(PDF)로 이메일 추가 제출
 -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엑셀파일)”와 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엑셀파일)를 이메일(sub@ggeea.or.kr)로 필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여 신청서에 제시된 구비서류 순서에 맞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사업장 현장평가 및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1부 제출.
⇒ 구비서류 양식 순서대로
인덱스 붙여 제출

5 보조금 지원액 및 지원한도

□ 보조금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방지사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최대 90% 지원(부가세 제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자체 방지사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사설 투자(C)
보조금 + 자부담+ 자체투자	(보조금 + 자부담)	A - B

※ 용량별 방지사설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사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사설	가스상물질 방지사설	공동방지사설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RTO 및 RCO 등 5.6억원)	최대 3.6억원 (필요시 최대 7.2억원)

□ 방지사설 종류·시설 용량별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사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2,970	1,650	1,320	330
		200㎥/분	4,700	4,230	2,350	1,880	470
		300㎥/분	6,300	5,670	3,150	2,520	630
		400㎥/분	7,500	6,750	3,750	3,000	750
		500㎥/분	8,000	7,200	4,000	3,200	800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200	1,080	600	480	120
		200㎥/분	2,300	2,070	1,150	920	230
		300㎥/분	3,000	2,700	1,500	1,200	3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380
		500㎥/분	4,100	3,690	2,050	1,640	410
흡수에 의한 시설	먼 지 용	100㎥/분	3,500	3,150	1,750	1,400	350
		200㎥/분	4,600	4,140	2,300	1,840	460
		300㎥/분	6,100	5,490	3,050	2,440	610
		400㎥/분	7,400	6,660	3,700	2,960	740
		500㎥/분	8,400	7,560	4,200	3,360	840
	가 스 용	100㎥/분	3,800	3,420	1,900	1,520	380
		200㎥/분	5,000	4,500	2,500	2,000	500
		300㎥/분	6,700	6,030	3,350	2,680	670
		400㎥/분	7,900	7,110	3,950	3,160	790
		500㎥/분	9,000	8,100	4,500	3,600	9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1,440	800	640	160
		200㎥/분	2,900	2,610	1,450	1,160	290
		300㎥/분	3,500	3,150	1,750	1,400	350
		400㎥/분	4,400	3,960	2,200	1,760	440
		500㎥/분	5,000	4,500	2,500	2,000	500
RTO (축열식소각로)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1,450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2,020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3,16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3,57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3,830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2,160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3,170
		300㎥/분	48,000	43,200	24,000	19,200	4,800
		400㎥/분	55,200	49,680	27,600	22,080	5,520
		500㎥/분	61,800	55,620	30,900	24,720	6,180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	100m³/분	24,300	21,870	12,150	9,720	2,430
	200m³/분	28,600	25,740	14,300	11,440	2,860
	300m³/분	33,200	29,880	16,600	13,280	3,320
	400m³/분	37,200	33,480	18,600	14,880	3,720
	500m³/분	40,700	36,630	20,350	16,280	4,070
전기집진시설	100m³/분	19,100	17,190	9,550	7,640	1,910
	200m³/분	28,300	25,470	14,150	11,320	2,830
	300m³/분	39,900	35,910	19,950	15,960	3,990
	400m³/분	49,500	44,550	24,750	19,800	4,950
	500m³/분	60,500	54,450	30,250	24,200	6,05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m³/분	6,000	5,400	3,000	2,400	600
	200m³/분	8,900	8,010	4,450	3,560	890
	300m³/분	11,500	10,350	5,750	4,600	1,150
	400m³/분	14,100	12,690	7,050	5,640	1,410
	500m³/분	15,900	14,310	7,950	6,360	1,590
기타시설	100m³/분	2,697	2,427	1,349	1,079	270
	200m³/분	3,928	3,535	1,964	1,571	393
	300m³/분	4,787	4,308	2,394	1,915	479
	400m³/분	6,239	5,615	3,120	2,496	624
	500m³/분	7,568	6,811	3,784	3,027	757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300만원)과 400㎥/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300만원 + 720만원 = 7,020만원
 -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6 = 720만원
-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 (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참여 신청서 사업비 금액 작성

전체 사업비 상 총 소요금액(A+B+C)은 총 지원금(A) 총 자부담(B) 자체투자금(C)으로 작성하며, 총 지원금(A)과 총 자부담(B) 은 **방지시설 시설별 용량 한도 지원액**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분에 대한 금액을 자체투자금(C)에 기재하여야 함

- 후드·덕트 금액산정은 해당 시설 중 고가의 방지시설 지원한도의 30% 이내로 상향
- ※ 예시) 해당시설이 1개일 경우
여과집진시설 300㎥/min 일 경우 지원한도 5,670만원의 30%인 최대 1,701만원 까지 상향 가능 (추후 금액증빙 필수)
- ※ 예시) 해당시설이 2개일 경우(직렬)
1차 여과집진시설 + 2차 흡착에 의한 시설 300㎥/min 일 경우 지원한도 5,670만원 과 3,150만원 중 고가의 시설 지원한도인 5,670만원의 30%인 최대 1,701만원으로 상향 가능(추후 금액증빙 필수)
- ※ 후드·덕트 추가 공사에 따른 금액 상향은 배출시설의 후드·덕트에 한정하며, 방지 시설의 덕트는 방지시설 설계 금액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과도하게 후드·덕트 금액 산정 할 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감액 및 조정할 수 있음

※ 추가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고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OO실업(주)		업 종(종별)	금속제조업 (4 종)	
	성명(대표자)	(대표자 이름)		핸드폰(대표자)	010-0000-0000	
	성명(담당자)	(담당자 이름)		핸드폰(담당자)	010-0000-0000	
	전화번호(담당자)	031-000-000		사업자번호	127-00-00000	
	이메일(담당자)	abc@naver.com		팩 스	031-000-000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00동 00-00				
사업장 현황 (교체 전)	대기방지시설 현황				사전 기술진단 우선자원	해당 ☒ (결과보고서 첨부 必)
	관련 배출시설	방지시설 종류	용 량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최근 자가측정 결과값
	성형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	360	1	먼지 / NOx	25.3 / 5.3
	*	반	드	시	작	성
			(별	첨	안	됨)
설치 및 개선 내용 (교체 후)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착공 예정일: 2026. 00.00. / 준공 예정일: 2026. 00.00. / 총 공사기간(예정): 일					
	관련 배출시설	방지시설 종류	용 량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목표 이론배출농도
	성형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	350	1	먼지 / NOx	10.3 / 2.1
전체 사업비 (VAT 제외) 만원단위 절사	총 소요금액 (A+B+C)	금74,400,000원		방지시설:	원	사물인터넷:
	총 지원금(A)	금64,710,000원 ※방지시설 시설별 용량 한도 지원액 참고		방지시설:	원	사물인터넷:
	총 자부담(B)	금7,440,000원		방지시설:	원	사물인터넷:
	자체투자금(C)	금2,250,000원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기재		-		
시 공 업 체	시공업체명	(주)OO테크		성명(대표자)	(대표자 이름)	
	성명(담당자)	(담당자 이름)		핸드폰(담당자)	010-0000-0000	
	이메일(담당자)	xyz@hanmail.net		전화번호(담당자)	031-000-0000	
	주 소	경기도 김포시 00동 00-00 (팩 스: 031-000-0000)				
위와 같이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 대표자) (인) 신청인(전문공사업체 대표자)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귀하						

■ 구비서류 (원본 1부)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필요시, 사용인감계 제출)

※ 각 구비서류 작성 시 관련 양식 참조,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부착하여 제출 요망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1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시공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 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17. 보조금 반납 협약서(서식16) 1부.
18. 위임장 1부.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현 처리효율 (a-b) ÷ a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 a]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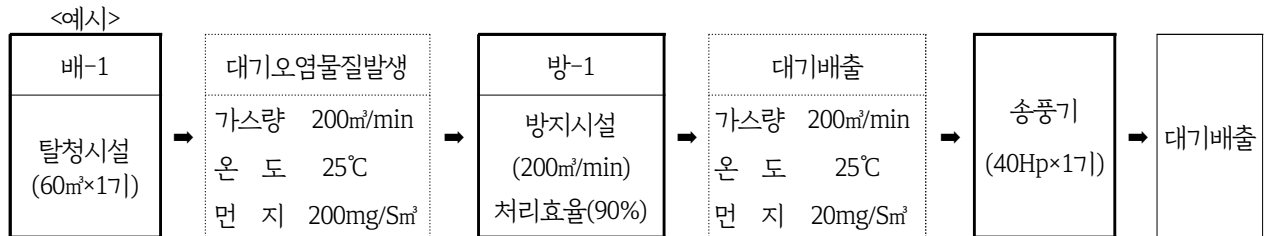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 EPA 배출계수
 -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가급적 A3(상세히))

-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만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단위 : 원, VAT제외)

총 공사금액 (①+②+③)	방지시설①	방지시설②	총 사물인터넷 금액③

[예시] 방지시설①= 방지시설A + 후드·덕트B + 농축기C(해당 시)

방지시설②= 방지시설A + 후드·덕트B + 농축기C(해당 시)

총 사물인터넷③= 방지시설① IoT + 방지시설② IoT의 총합계 금액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단위 : 원, VAT제외)

공사금액① (A+B+C)	방지시설 (A)	후드·덕트(B)	기타(농축기C)

나) 방지시설

공 사 종 별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 사 비	소 계		※ 해당 표에 대한 내용은 필수 기재 (추가 내용 필요시 별첨)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 (덕 트) 공 사		
	전 기 공 사		
	기 타 공 사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다) 후드·덕트

- ※ 후드·덕트는 해당 시설 보조금(한도 30%) 내에서 상향 가능
- ※ 후드·덕트 부분은 해당 시설 공사로 인한 금액 초과시에만 작성할 것.
- ※ [중요] 비용 과다산정 시 사업평가위원회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공 사 종 별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공 사 비	소 계		※ 해당 표에 대한 내용은 필수 기재 (추가 내용 필요시 별첨)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라)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 사 종 별	공사구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순 공 사 원 가	차 압 계 (압 력 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 H 계 (흡 수 · 세 정 시 설)	1,000,000			
	전 류 계 (전 기 집 진 시 설)	300,000			
	전 류 계 (세 정 펌 프)	300,000			
	온 도 계	500,000			
	전 배 출 류 시 계 설	300,000			
	전 방 지 류 시 계 설	300,000			
	I o T 게 이 트 웨 이	1,600,000			
	V P N	400,000			
	합 계				

마) 농축기 견적서 첨부(해당 시) ※농축기 본체만 추가 실비지원 가능.

농축기명	용량	수량	금액

※ 신청 방지지설이 여러 개 일 경우, 방지지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방지①, 방지②)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 목 밀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
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소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지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지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지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지설 지원(신청)실적

-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지설 내역
-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비서류 3】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카카오맵 지도 활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z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나의합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이행확인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사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사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사후관리 및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이행 동의서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업장 및
환경전문공사업체는 해당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및
자가측정기록부를 제출(반기 1회)하는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³)*2, 탈사(15m³)*2 (방지) 흡수예의한시설(300m³)*1

설치대상*	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

-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부착기기	근거
전류계(배출시설)	예시) -부착면제 대상이 없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예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2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작업 특성상 가열기를 사용하므로 가열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상시 온도 유지를 위해 작업시간 외 가동하므로, 판정제외 시간 신청 예정) -부착면제 대상이 있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예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3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1.산처리시설 5.6㎡]과 연속공정이므로 부착 면제하고자 함.
전류계(방지시설)	예시) 배출구 1번 (1차)여과예의한시설 + (2차)흡착예의한시설로 송풍기 1기 현장설치 확인. 송풍기 가동 확인을 위해 전류계 1기를 설치하고자 함
차압계	예시) (1차)여과예의한시설+(2차)흡착예의한시설로 (1차)여과예의한시설은 집진시설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 확인 결과 각각 차압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기를 설치하고자 함
온도계	예시) 방지시설 전단 인입배관이 두 개로 현장 확인되어 각 배관에 1기씩 총 2기를 설치하고자 함
pH계	
IOT 게이트웨이	예시) 외부요인(직사광선, 비 등), 눈높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도면 참조) 배출구 1~4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복수굴뚝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자 함
VPN	예시) 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사업장으로(00m) VPN 2기를 설치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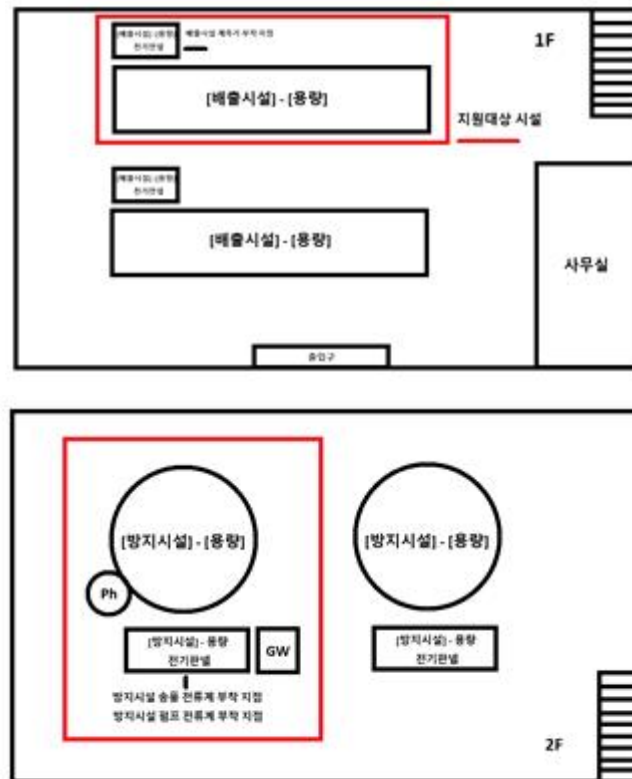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전체시설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원대상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2. 주 출입구, 사무실 등 표기
3.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
4.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표기
5. 부착기기(전기판넬 위치 등) 및 GW 설치 위치 표기
6. 배출시설명과 용량 표기
7. 시설간 이격거리 표기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7~18 참조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 기재

○ 방지시설 ○

			
방지시설명(용량)	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설치 위치	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	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 흡수·여과·집진시설 ○

		
방지시설 pH계(순환조) 설치 위치	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외함)	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내부)

○ 흡착 / 여과·집진시설 ○

		
온도계 설치 위치	차압계 IN 설치 위치	차압계 OUT 설치 위치

○ 배출시설 ○

		
배출시설명(용량)	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	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RAS) 성적서 제출시, 각각

1Page 선명한 해상도의 성적서를 첨부하고, 실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

ex)

[흡수예의한시설] - [Ph계, 실제 부착 CT(50A, 150A) 성적서 제출]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세정집진시설] - [실제 부착 CT(50A, 100A) 성적서 제출] -[Ph계,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여과집진시설] - [차압계, 온도계, 실제 부착 CT(100A, 150A) 성적서 제출] - [Ph계 성적서 제외]

- 1) 전류계: 배출.방지시설
- 2) 차압계(압력계)
- 3) 온도계
- 4) pH계
- 5) Gateway
- 6) VPN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아래 내용 명확히 확인가능한 *협력업체계약서로 첨부바람

- 추후 AS(하자보수, 유지보수, 손해배상책임 등) 담당업체

*협력업체계약서

Gateway업체와 설치업체 간의 상호계약서(공단제공 협정서 서식 참고)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 ○ (인)

대표자 ○ ○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 협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사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사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사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방지사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사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사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구비서류 18】

위 입 장

수 입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이
의
의

수 입 자 : (인감도장)

위 임 자 : (인감도장)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중

【기타서식 1】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유서

신청 기업 현 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요 청 사 항	※해당 내용 체크 ☐ 기존 방지시설 대비 용량 증가 신청 ☐ 후드·덕트 및 농축기 추가 지원 신청 ☐ 선정 이후 착공기한 1개월 연장 신청			
요 청 내 용	- 요청사항에 대해 기술적으로 상세히 작성 - 후드·덕트 추가 지원 신청의 경우, 도면 첨부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대표자) : (인) 시공업체(대표자) :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기타서식 2】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공 사 명	“○○시 수해기업명” OO집진시설, 000m/m³ 및 IoT 설치 공사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팩 스	
설치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팩 스	
공 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부담액	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일 일

시공업체명(대표자)

(인감도장)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준 공 신 고 서			
공 사 명	“○○시 수혜기업명” OO집진시설, 000m/m³ 및 IoT 설치 공사		
사 업 장 명			
사업장 소재지		전 화	
시공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공 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부담액	원		
상기와 같이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공업체명(대표자) (인감도장)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구비서류	1. 사진대지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전후 사진대지, 준공표지판 부착사진 포함) 2. 사물인터넷 부착완료 통보서 및 그린링크서버전송확인서 3. 공사비총괄내역서(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등 첨부) 4. 자가측정 성적서(사본, 설치 전·후) 각 1부.		

등 록 번 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제 호									
통 보 인	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②대 표 자								
	③주 소	(전화번호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⑤업 종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년 월 일							
⑧부착(개선) 내역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진류계 수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	방지	송풍				
⑨ 부 착 면 제 내역	배출시설명	면제항목		면제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3.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전류계: 배출시설

전류계: 방지시설

차압계(압력계)

온도계

pH계

기타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주소	

배출구 정보

배출구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게이트웨이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비고
1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6.08.08.~2026.08.12.(2023.08.10.)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점검항목	테스트 세부내용	테스트 결과
통신시험	수신자료	자료 수신	정상/비정상
	원격명령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1개 항목이라도 비정상일 경우 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설정정보 일치성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정상/비정상
	관계정보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 가동 여부 판단	정상/비정상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덧붙임)

별첨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관할지자체	
배출구		사업자등록번호	
종별구분		업종	
주소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배출구타입	배출구직경	가동개시일자	신설일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모델명	통신 프로토콜	펌웨어버전	게이트웨이IP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배출구 번호	시설 코드	시설명	분류	용량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가동 개시일자	신설일자
1	1	E3501	배출1	35) 도장시설	86.3 m ³	F0001		2020-01-01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시설명	종류	측정항목			
			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배출시설	배출1	도장시설	1	1	1	1
	배출2	도금시설	1	-	-	1
방지시설	방지1	여과/흡착	1			
	방지2	흡수에 의한 시설	1			
송풍시설	송풍1	송풍(ID fan)	1			
	송풍1	송풍(ID fan)	1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점검기간		
점검결과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점검시점	점검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2023.07.01.		2023.07.02.		2023.07.03.		2023.07.04.		2023.07.05.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건수	전송률
5분											
30분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코드	원격명령 시험내용	점검일자	점검결과	비고
1	PDUH	저장자료 요청	2023.07.01	정상/비정상	
2	PFST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3	PCN2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4	PSEP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정상/비정상	
5	PUPG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정상/비정상	
6	PVER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정상/비정상	
7	PSET	수동 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8	PFCC	시설코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9	PAST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0	PFGR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정상/비정상	
11	PFRS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정상/비정상	
12	PRSI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3	PDAT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정상/비정상	
14	PODT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정상/비정상	
15	PRBT	GW 장비 재가동		정상/비정상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보 조 금 청 구 서					
공 사 명		“○○시 수해기업명” OO집진시설, 000m/m³ 및 IoT 설치 공사			
사 업 장 명					
사업장소재지				전 화	
시공업체명					
시공업체 소재지				전 화	
공 사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준공검사일	년 월 일	
총 공사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부담		원			
청 구 내 용	시공업체	보조금 청구액(원)	입금내역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대표자) (인감도장)					
시공업체명(대표자) (인감도장)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구비서류	1. 하자보험이행증권(시공업체→사업장, VAT포함, 준공검사 일로부터 2년, 5%) 2. 세금계산서(시공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3. 자부담 입금확인증 4. 통장사본(시공업체)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시공업체) ※유효기간 필히 확인				